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5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11.2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7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17.12.5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중앙도서관추진단장 진경섭

### 가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 건립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기금 설치 목적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준공 및 개관으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본 조례 폐지
- 2)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3년11월14일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·운용하여 왔으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준공 및 개관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에 의거,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